

##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계획 수입 신청시 제출서류 명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획수입 신청시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사항을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I. 개정 이유

계획수입 신청대상이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 및 외화획득용 원료로 확대됨에 따라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고**,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과 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에 대해 최근 5년 간의 검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II. 주요 내용

#### 1.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항 수정(제4조)

○ 총리령 제1918호(2023. 12. 1.)을 반영하여 조항 수정

현 행	개 정
제4조(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 <a href="#">시행규칙 별표 9 제1호</a> 카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수입식품등) <a href="#">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1호</a>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 2. 안정성이 확인된 자사제품제조용 원료 및 외화획득용 원료의 계획수입 신청대상 확대에 따른 절차 구체화(제6조 및 별지 서식 제1호)

○ 계획수입 신청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제출서류 명확화

현 행	개 정
제6조(계획수입 신청 등) ② 제37조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등록하거나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a href="#">자사제품</a>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첨가물 중 <a href="#">항료 및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가목의 10)에 해당하는 품목</a> 의 연간 계획 수입량에 대해 <a href="#">별표9 제2호 가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나목의 현장검사를 생략</a>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 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또는 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첨부하여 연간 계획수입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수입 신청 등) ② 제37조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등록하거나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a href="#">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가목의 1)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자사제품</a>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첨가물 중 <a href="#">항료 및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가목의 10),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가목의 13) (단, 수산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시험·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품목(단, 축·수산물은 제외한다)</a> 의 연간 계획 수입량에 대해 <a href="#">별표9 제2호 가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나목의 현장검사를 생략</a>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 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또는 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첨부하여 연간 계획수입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1. ~ 2. (생략)
3. <신 설>	3. <a href="#">별지 9호 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외화획득용원료에 한함)</a>
4. <신 설>	4. <a href="#">국외 시험·검사계획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품목에 한하며, 시험·검사항목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따른다.)</a>

3.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 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범위 조정([별표 1])

- 농·임산물 중 최근 5년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말레이시아산 후추 및 칠레산 월귤(블루베리)/열매를 인정범위에서 제외

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반영([별표2] 표6)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총리령 제1813호, 2022. 6. 30.)에 따라 농·임산물 관능검사 결과표에 소비기한 문구 추가

5.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113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128종으로 조정([별표5])

-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113종 외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18종을 추가하고, 113종 중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농약 3종을 제외함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Contact



안성호 관세사 / Senior Manager  
T 070-4353-3048  
E [shahn@esein.co.kr](mailto:shahn@esein.co.kr)



이수호 / Asso  
T 070-4353-5151  
E [shlee3@esein.co.kr](mailto:shlee3@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